

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4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1981. 7. 1 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(이하 협의회라 한다) 설치 조례는 협의회 구성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,
-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, 부정적 의미로 시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 위촉시 획일적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인의 경우 위촉토록 함(안 제3조제2항)
- 나.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·음식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함(협회)을 삭제함(안 제3조 제2항 6호, 7호)
- 다.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, 마약, 미군수 물자 등 부정적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“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” 으로 단순화 함(안 제4조제1항)
- 라.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(안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)
- 바.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 시기를 미군의 잦은

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7조)

사.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“도한미친선합동위원회”를 현실에 맞도록 “경기도 한미
협력 협의회”로 변경함(안 제11조)

아.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경기도의
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(안 제12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다만,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중 당연직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제6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, 제7호는 삭제한다.

6.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·음식업협회

제4조제1항 중 “공동 관심사와”를 “공동 관심사와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 및”으로 하고, “제반사항 및 시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”를 “제반사항에 대하여”로 한다

제4조제2항은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를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③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조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4항중 “분임협의회”를 각각 “실무협의회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2인내지 3인”을 “협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 공무원 및 기관의 필요한 인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”를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도 한미친선합동위원회”를 “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” 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보고)”를 “(건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삭제한다.

-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한다”

제12조제2항은 삭제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특별대책지역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특별대책지역과장 한 천 일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개발행정담당 전 흥 식
	담 당 자 성명 · 전화	한 은 주 860-2732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보고) ①위원장은 아래 각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</p> <p>1. 소속협의회와 관내 전협의회의 협의회 개최 사항</p> <p>2. 제9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 사항</p> <p>3.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우려가 있는 사항</p> <p>4. 기타 도의 지원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②제1항제1호의 보고는 전월분을 익월7일까지 제2호와 제4호의 보고는 즉시 각각 서면보고하고 제3호의 보고는 지휘보고로 한다</p>	<p>제12조(건의)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한다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<u>다만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<u>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,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 <p>제6조(분임협의회)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<u>분임 협의회</u>를 구성한다</p> <p>②<u>분임협의회</u>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<u>2인내지 3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시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건의될 사항은 <u>분임협의회</u>에서 협의할 수 있다</p> <p>④<u>분임협의회</u>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</p> <p>제7조(회의)협의회는 <u>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</u>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. 다만,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미결사안의 처리)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<u>도한미친선택동위원회</u>에 건의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①----- ----- ----<u>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②(현행과같음)</p> <p>③<u>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 <p>제6조(실무협의회) ①----- ----- ----- -- <u>실무협의회</u> -----</p> <p>②<u>실무협의회</u>----- ----- <u>협의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공무원 및 기관의 필요한 인원</u></p> <p>③----- -----<u>실무협의회</u>----- -----</p> <p>④<u>실무협의회</u>----- ----- -----</p> <p>제7조(회의)----<u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1조(미결사안의 처리) ----- ----- <u>경기도 한미협력 협의회</u>에 건의한다.</p>